

3.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中 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06호 1997. 7. 11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종료시점지가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함.

주요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 3(지가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 3(지가산정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지가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주택회보